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8. 25 선고 2019가단10990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탑승

피 고 1. 의료법인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희은

변 론 종 결 2022. 7. 21.

판 결 선 고 2022. 8. 2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의료법인 B은 25,488,970원, 피고 C은 5,704,41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손해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실손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판매한 보험자이고, 피고 의료법인 B은 D병원을 및 E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며, 피고 C은 F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별지 각 정리표1) 기재 피보험자들(이하 ‘이 사건 피보험자들’이라 한다)과 실손 의료비를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데, 위 피보험자들은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손상 등으로 피고들 병원에 내원하여 자기공명영상진단(Magnetic Resonance Imaging, 이하 ‘MRI’) 촬영을 받고, 피고들 병원이 비급여 진료비 명목으로 청구하는 MRI 진단비를 피고들 병원에 납부한 후, 이에 해당하는 진단비를 실손 의료비로 원고에게 청구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위 피보험자들에게 MRI 진단비 상당 금액을 각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보건복지부 고시(제2010-75호)에서 인정하는 MRI 세부산정기준에 의하면, MRI 급여 기준을 넓게 확장하고 있는데, ① 척추질환으로 척추골절 등, ② 관절질환으로 무릎관절 및 인대의 손상(반달연골의 열상 등) 등을 전부 요양급여의 내용으로 산정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이 MRI 검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인정 사항에 해당되는 환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들 병원은 MRI 진단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로 청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피고들 병원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이 사건 피보험자들에게 전부 청구한 것이며, 이에 위 피보험자들은 피고들 병원의 청구에 따라 MRI 진단비를 피고들 병원에 각 지급하였고, 피고들 병원은 고액의 MRI 진단비를 위 피보험자들에게 직접 청구 및 수납하였는바, 피고들이 요양급여 대상인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손상 등으로 MRI 검사를 진행하면서 그 진단비를 비급여로 청구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국민건강보험상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 등에게 이를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결국 피고들 병원은 위 피보험자들이 피고들 병원에 MRI 검사비로 지급한 금액에서 MRI 요양급여 환자부담금의 차액 상당을 부담이득하였고, 그 금액은 피고 의료법인 B의 경우 25,488,970원(= E병원 15,232,197원 + D병원 10,256,773원), 피고 C의 경우 5,704,416원에 이른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피보험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진단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상당액을 뺀 나머지 금액(별지 정리표 편취금액란 기재 각 금액)을 피보험자들에게 부담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위 피보험자들에 대하여 같은 금액의 보험금 반환채권이 있는바, 원고는 위 피보험자들에 대한 보험금 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보험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부담이득반환채권을 대위행사하므로, 피고들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별지 정리표 편취금액란 기재 각 금액의 합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 항변의 요지

이 사건 피보험자들이 무자력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의 채권자대위권행사가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구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참조). 하지만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이라 하더라도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외적으로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1784 판결 참조).

2)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 보전하고자 하는 권리는 이 사건 피보험자들에 대한 금전채권인데, 원고는 채무자인 이 사건 피보험자들이 무자력이라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고, 나아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보험자들의 자력 여부를 알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위 피보험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행사할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①원고의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피보험자들에 대한 보험금 반환채권은 원고와 위 피보험자들 사이에 체결된 각 보험계약상 지급요건의 해당 여부에 따라 그 성부가 결정되는 것이고, 피대위채권인 피보험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해당 각 진료계약의 강행규정 위반 여부 등에 따라 그 성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사실상 관련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양 채권 사이에 법률상 계약상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채권자대위권은 사적자치와 자기책임원칙에서 유래하는 권리행사의 자유, 즉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리를 제한하여 타인의 권리를 그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것으로서, 이러한 권리행사에 대한 간섭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채권자의 채권회수의 편의를 위한 경우는 위와 같은 '보전의 필요성'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데, 원고가 다수의 피보험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이를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다거나 위 피보험자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소액의 진료비를 환급받기 위하여 노력과 비용을 투입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③원고가 이 사건 피보험자들로부터 보험금을 환수한다 하더라도, 위 피보험자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것인지 여부는 환자와 의사의 관계, 진료의 경과 및 결과, 원고로부터 환수된 보험금의 액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고가 위 피보험자들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위 피보험자들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수 있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환

별지

1) 갑 제1호증의 1 내지 3(각 정리표)과 같다.